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4월 1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5월 7일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행정안전국장 이 관 응

나. 제안이유

### ○ 시청사 별관5 증축

행정수요 증대로 인한 부족한 업무공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임시 사무실의 임차료를 최소화하고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코자 함.

### ○ 국방부 무상허가지 매각

국방부에서 예비군훈련장으로 무상사용 중인 사유지를 국방부에  
매각하여 사용현황 일치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함.

##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시청사 별관5 증축

- 위 치 : 구미시 송정동 50번지
- 대 상 : 건물 지상5층 11,600m<sup>2</sup>(3,509평)
- 기준가격 : 19,900백만원(시설비)
- 재원조달 :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주요시설 : 주차장(9,000m<sup>2</sup>, 1~3층), 공공업무시설(2,600m<sup>2</sup>, 4~5층)

### 【처분재산】

#### ☐ 국방부 무상허가지 매각

-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산50-3, 산50-4번지
- 대 상 : 토지 11,306m<sup>2</sup>(3,420평)
- 사업기간 : 2019년
- 기준가격 : 73백만원(공시지가)

## 라. 참고사항

####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20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3조

###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경 자

#### ○ 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은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19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시청사 별관5 증축 및 국방부 무상허가지 매각 등 총 2건임.

#### ○ 「시청사 별관5 증축」 건은

- 별관2 전면주차장 및 대피소 상부 주차장 약3,600㎡의 부지에 별관5 사무실과 주차장을 증축하여 행정수요 증대로 인한 부족한 업무시설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공간 2개 층(2,600㎡)과 주차공간 3개 층(9,000㎡)을 조성할 계획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해 임시사무실의 임차료를 최소화하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방문 민원인의 편의증진, 청사 내 주차난 해소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방부 무상허가지 매각」 건은

- 현재 국방부 산하 군부대(5837부대)에서 군사시설부지(예비군 훈련장)로 무상사용중인 시유림 고아읍 송림리 산50-3, 산50-4 번지를 국방부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국유지인 문성배수지 신설사업지와 시유지인 국방부 무상대부지 상호교환에 대해 승인하였으나, 배수지 신설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기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당초 교환 예정이었던 시유지는 국방부에 매각하고자 하는 안임.
- 본 재산을 보유하며 계속적으로 국방부에 무상대부 하기보다 매각하여 사용현황을 일치시킴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